알코올음료 통제 이의제기 위원회 절차 흐름도

이의제기 신청인이 위원회 및 기타 모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위원회는 알코올음료 통제국에 결정증명서 (Certificate of Decision)를 요청합니다.

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시기 적절한지 확인합니다(이의제기 기한은 웹사이트 참조). 이의제기가 시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각됩니다.

알코올음료 통제국으로부터 결정증명서를 받으면 위원회는 수령확인 서신을 보내고 통제국은 이의제기 신청인에게 납부 요청을 합니다.

이의제기 신청인은 15일 이내에 알코올음료 통제국에 기록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제기 신청은 기각됩니다.

위원회와 이의제기 신청인은 알코올음료 통제국으로부터 기록을 받습니다(행정 심리 녹취록 및 증거물 포함).

위원회는 개시 적요서, 회신 적요서 및 종결 적요서의 마감일이 포함된 적요서 일정을 모든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위원회는 이의제기 관련 청문회를 정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청문회 날짜 및 기타 세부 정보를 보냅니다.

청문회 최소 21일 전에 이의제기 신청인은 구술 변론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원과 직원은 기록을 검토하고 다가오는 위원회 청문회를 위해 해당 사례를 요약 및 분석합니다.

구술 변론 시 사례가 위원회 앞에서 변론되고 비공개 회의에서 심의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당사자에게 보내지며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